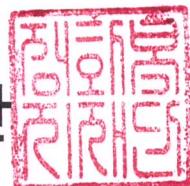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정화복지재단』

# 정기이사회 회의록

2022년 1월 18일

사회복지법인 정화복지재단



## 정기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11:00 ~ 11:50

2. 장 소 : 법인사무국

3. 참석자 : 대표이사 이세창

이사 김정철, 이상근, 최재용, 박옥순  
감사 윤철선

4. 안건 : 1.2021년도 법인 및 시설 결산서 심의 의결의 건

2.수익사업에 대한 임대계약 허가건 심의 의결의 건

3.법인 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감사 연임의 건

4.기타 안건-정화노인요양원 운영규정 개정 변경 승인의 건

5. 회의내용

제적이사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므로 성원보고와 회의개회를 선언합니다.

○ 대표이사 : 본 사회복지법인을 위해 항상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참석이사님들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법인과 산하시설의 결산서 심의 의결 건에 대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분들과 결산자료 검토를 받은 사무국장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 윤철선 감사(사무국장 보고) : 보고에 앞서 나누어 드린 2021년도 법인과 각 시설의 결산 총괄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가 2년간 계속되는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입소어르신을 성심으로 모신 결과 사회복지법인 정화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대한 결과는 노인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의 입소율과 이용률이 타 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과 입소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이사 이하 전 직원의 부단한 노력을 볼 수 있었으며, 어르신 개별 케어에 따른 차별화 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입소어르신 생활 케어의 질적 향상과 노인 케어에 대한 전문성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되며 법인과 산하 시설의 회계 처리 업무 전반은 잘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 1. 2021년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의 결산서 심의의 건

- 대표이사 : 감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법인의 일반회계 결산은 수익사업 전입금으로 지출을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결산은 2021년 월세 수익금 36,672,000원을 수익사업체 운영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천만원을 법인의 일반사업회계로 전출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정화노인요양의 결산은 결산결과 세입예산대비 결산은 101.11% 세출예산대비 결산은 99.40%로 집계되었으며, 이월금은 60,616,581원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법 고시 상 60.5%이상인 종사자인건비 지출비율은 정화노인요양원의 연간비율 71.3%로 확인되며, 산하시설인 정화 주·야간보호센터의 결산은 결산결과 세입예산대비 결산은 100.85% 세출예산대비 결산은 91.80%, 이월금은 57,744,456원이며 장기요양보험법 고시 상 48.3%이상인 종사자인건비 지출비율은 고시대비 두 배에 달하는 연간 비율이 83.6%로 확인 집계되었습니다. 양로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회계자료와 감사보고서에 따른 2021년도 각 산하시설의 세입·세출 결산표 및 사업실적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용이사 : 감사결과 보고와 자료를 보니 예산과 결산이 별 무리 없이 잘 집행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의 결산서 및 사업실적은 보고한 내용대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안에 대한 심의는 승인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 김정철이사 : 최재용이사님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 이상근이사 : 사회복지법인의 전년도 결산사항을 보고 받으니 정화복지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이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이 건은 저도 최재용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박옥순이사 : 법인 대표이사님의 자신감에 찬 말씀을 들어보니 산하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법인과 산하시설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드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 대표이사 : ~~김자합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정화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대한 결과는 코로나 시기가 2년이 넘어가는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입소어르신을 성심으로 모신 결과 지역사회의 평판이 좋아서 항상 정원을 채우고 요양원의 경우 대기자까지 20여명 이상 항상 대기 중에 있으며 입소어르신들의 개별케어를 통한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입소어르신 생활 케어의 질적 향상과 노인 케어 전문성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승인 제의와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김정철이사 : 대표이사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최재용이사 : 예, 저도 동의합니다.

○ 박옥순이사 :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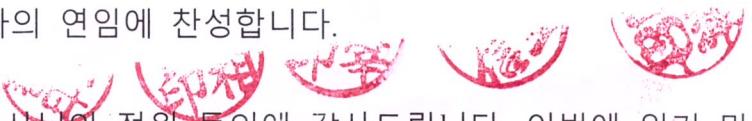
○ 이상근이사 : 예, 저도 동의합니다.

○ 대표이사 : 그럼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의 결산서 및 사업실적에 대한 안은 심의·승인·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에 대한 임대계약 허가건 심의 의결의 건 관한 안건으로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2. 수익사업에 대한 임대계약 허가건 심의 의결의 건

○ 대표이사: 다음은 당 법인의 수익사업용 집합건물인 미래아트빌의 개별 호실 임대에 관하여 전체 건물의 임대에 관해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개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에 수익사업의 원룸 임대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상근이사 : 매년 정기이사회에서 일괄로 전체 건물에 대하여 임대에 관해 의결을 하면 수월하게 임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바 입니다.
  - 대표이사 :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규칙 제14조에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처분 허가를 받아야한다.”라는 조문으로 인하여 수익사업의 임대계약 시는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개별 호실 임대의 경우 전체 건물의 임대에 관해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으로 갈음한다”고 개정이 되어,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전체 건물의 임대에 대하여 임대결의를 해 주시면 개별 호실에 대한 허가를 위한 이사회 개최를 안해도 되게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최재용이사 : 예, 원룸이나 투룸 임대계약은 보통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도 이 안건에 찬성합니다.
  - 김정철이사 : 예,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하여는 참석이사님들의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저는 이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 박옥순이사 : 저도 찬성합니다.
  - 대표이사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수익사업 원룸과 투룸의 임대계약에 따른 이사회 개최를 매년 정기이사회 개최 시 전체 건물의 개별 호실 임대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이사님들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 ### 3. 법인 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감사 연임의 건
- 대표이사 : 이번 안건은 2022년 1월 19일 감사 두 분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박 은 규 감사님은 부경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윤 철 선 감사님은 세무법인 인성의 세무사로 재직 중에 있고 두 분 모두 다 회사 회계 일을 오래 하고 계시어 저희 사회복지법인 정화복지재단 회계 처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감사로 연임하고자 하는데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상근이사 : 예, 저는 두 분 오랫동안 저희 법인하고 감사로서 인연을 맺었으면 합니다. 두 분 감사의 연임에 찬성합니다.
  - 김정철이사 : 예,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지만 당 사회복지법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 최재용이사 : 저도 감사의 연임에 동의합니다.
  - 박옥순이사 : 저도 감사의 연임에 찬성합니다.
- 
- 대표이사 : 예, 침석이사님의 전원 동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임기 만료 되신 두 분의 감사 연임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 4. 기타 안건-정화노인요양원 운영규정 개정 변경 승인의 건

- 대표이사 : 이번에 정화노인요양원은 운영규정 제36조의 직원 징계의 종류 중에 처분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경조휴가를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78조의 육아대상자의 변경을 사유로 운영규정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한다고 합니다.
- 이상근이사 : 근로기준법에 준거한 운영규정의 내용과 보건복지부 고시들로 변경이 되면 운영규정의 내용들이 요양원 운영에 따른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겠네요. 저는 이 안건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 김정철이사 : 예, 저는 이 안건에 동의합니다.
- 최재용이사 : 예, 저도 이번 운영규정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운영규정의 미비한 점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옥순이사 : 예, 저도 이 안건에 동의합니다.
- 대표이사 :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화노인요양원의 운영규정을 2022년 2월 1일 자로 개정하여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동의 및 제청이 있어 심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 대표이사 : 예,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정화복지재단의 정기이사회에

각자의 사업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사님들에게 장시간 안건에 대하여 승인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참석이사님들 전원의 동의로서 심의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본 정기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4일

